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28의2] <개정 2014.6.10>

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(제48조제4항제6호 관련)

1.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다음 표의 최소광도 이상일 것

측 정 점		최 소 광 도(칸델라 : cd)	
		적 색	황 색
10U	5L	20	50
	V	50	125
	5R	20	50
5U	20L	150	375
	10L	300	750
	5L	300	750
	V	300	750
	5R	300	750
	10R	300	750
	20R	150	375
H	30L	30	75
	20L	180	450
	10L	400	1000
	5L	500	1250
	V	600	1500
	5R	500	1250
	10R	400	1000
	20R	180	450
	30R	30	75
5D	30L	30	75
	20L	200	500
	10L	300	750
	5L	450	1125
	V	450	1125
	5R	450	1125
	10R	300	750
	20R	200	500
	30R	30	75
10D	5L	40	100
	V	40	100
	5R	40	100

2.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의 합이 다음 표의 최소광도의 합 이상일 것(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위 표에 의한 최소광도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)

구 역	측 정 점 (도)		최소광도의 합(칸델라 : cd)	
			적 색	황 색
1	H	30L	590	1475
	5D	30L		
	5U	20L		
	H	20L		
	5D	20L		
2	10U	5L	90	225
	10U	V		
	10U	5R		
3	5U	10L	1500	3750
	5U	5L		
	5U	V		
	5U	5R		
	5U	10R		
4	H	10L	2400	6000
	H	5L		
	H	V		
	H	5R		
	H	10R		
5	5D	10L	1950	4875
	5D	5L		
	5D	V		
	5D	5R		
	5D	10R		
6	10D	5L	120	300
	10D	V		
	10D	5R		
7	5U	20R	590	1475
	H	20R		
	5D	20R		
	H	30R		
	5D	30R		